

장: (100) 지방세수입

관: (110) 지방세

항: (111) 보통세

목: (111-04) 주민세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100 지방세수입		228,985,000	208,309,000	20,676,000	
110 지방세		228,985,000	208,309,000	20,676,000	
111 보통세		188,025,000	172,581,000	15,444,000	
	111-04 주민세	50,300,000	44,373,000	5,927,000	◎주민세 = 50,300,000
	111-05 재산세	39,500,000	36,394,000	3,106,000	◎재산세 = 39,500,000
	111-06 자동차세	32,000,000	30,715,000	1,285,000	◎자동차세 = 32,000,000
	111-08 도축세	1,946,000	1,946,000	0	◎도축세 = 1,946,000
	111-10 담배소비세	38,279,000	38,279,000	0	◎담배소비세 = 38,279,000
	111-11 주행세	26,000,000	20,874,000	5,126,000	◎주행세 = 26,000,000
112 목적세		32,660,000	28,801,000	3,859,000	
	112-01 도시계획세	28,100,000	24,286,000	3,814,000	◎도시계획세 = 28,100,000
	112-03 사업소세	4,560,000	4,515,000	45,000	◎사업소세 = 4,560,000
113 지난년도수입		8,300,000	6,927,000	1,373,000	
	113-01 지난년도수입	8,300,000	6,927,000	1,373,000	◎지난년도 수입 = 8,300,00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1) 재산임대수입

목: (211-01) 국유재산임대료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200 세외수입		87,614,955	97,158,969	△9,544,014	
	210 경상적세외수입	37,542,457	40,425,655	△2,883,198	
	211 재산임대수입	2,353,839	2,953,025	△599,186	
	211-01 국유재산임대료	110,603	112,471	△1,868	
					◎오정구 고강본동 315번지와 134필지(본청) = 107,378
					◎원미구 약대동 179-15외 7건(원미구) = 2,672
					◎소사구 소사본동 370-2번지와 9건(소사구) = 553
	211-02 공유재산임대료	2,243,236	2,840,554	△597,318	
					◎원미구 삼곡1동 83-1번지와 14필지 = 45,936
					◎시청새마을 금고(매점,자판기) 장소임대료 = 18,231
					◎시금고(농협) 임대료 = 68,449
					◎여행사(동화) 임대료 = 4,110
					◎차량번호판교부실 임대료 = 3,486
					◎구두미화소 임대료 = 579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1) 재산임대수입

목: (211-02) 공유재산임대료

[단위:천원]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부천테크노파크 201동 지3호 임대수입 = 3,826
					◎부천테크노파크 201동 105호 (한국생산기술연구원)임대수입 = 5,349
					◎부천테크노파크 203동 임대료 = 614,804
					◎부천테크노파크 401동 임대료 = 473,969
					◎부천테크노파크 A동 13개실 임대료(한국조명기술연구소) = 50,271
					◎영상문화단지 임대료(판타스틱제1스튜디오) 2,248,170원X12월 = 26,978
					◎영상문화단지 임대료 988,000원X1,485㎡X50/1,000 = 73,359
					◎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임대료 14,000원X1,669㎡ = 23,366
					◎폐기물종합처리장(주유,세차,정비) 임대료 = 28,415
					◎음식물수거차량 임대료 = 26,160
					◎공원 매점임대료 150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중앙공원 3개소 = 90,000
					●호수공원 1개소 = 60,000
					◎부천지하상가 임대료 (141개소) = 368,035
					◎베르네시장상가 임대료(179개소) = 27,233
					◎도서관 식당 임대료 82,853
					●중앙도서관 = 37,625
					●꿈빛도서관 = 33,744
					●심곡도서관 = 4,551
					●북부도서관 = 6,933
					◎도서관 매점 임대료 8,798
					●중앙도서관 = 198
					●꿈빛도서관 = 8,600
					◎도서관 재판기 장소 임대료 576
					●중앙, 심곡도서관 = 273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꿈빛도서관 = 210
					●북부도서관 = 93
					◎사물보관함장소 임대료 = 627
					◎원미구 85,545
					●시 공유재산 대부료 73,360
					- 원미구 춘의동 300번지외 50건 = 73,360
					●구금고(농협) 임대료 = 6,600
					●자판기장소 임대료(구청3대, 동사무소 3대) = 585
					●도시공원 점용료 = 5,000
					◎소사구 9,376
					●시 공유재산 대부료 1,701
					- 소사구 소사본동 277-19호외 4건 = 1,701
					●구 금고(농협) 임대료 = 7,375
					●자판기장소 임대료 = 30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1) 재산임대수입

목: (211-02) 공유재산임대료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오정구 42,905 ●구금고(농협) 임대료 = 11,309 ●자판기장소 임대료 = 656 ●구두미화소 임대료 = 250 ●한국영상자료원(부천분원) = 30,690
	212 사용료수입	7,299,887	7,281,401	18,486	
	212-01 도로사용료	2,627,417	2,258,767	368,650	
					◎도로사용료 2,627,417 ●원미구 = 1,667,417 ●소사구 = 360,000 ●오정구 = 600,000
	212-07 입장료수입	681,117	734,364	△53,247	
					◎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 입장료 24,169,750원X12월 = 290,037 ◎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1,500,000원X54회 = 81,00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2) 사용료수입

목: (212-07) 입장료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박물관 입장료 310,080 ●부천교육박물관 1,140,000원X12월 = 13,680 ●유럽자기박물관 800,000원X12월 = 9,600 ●부천활박물관 900,000원X12월 = 10,800 ●자연생태박물관 23,000,000원X12월 = 276,000
	212-08 기타사용료	3,991,353	4,288,270	△296,917	
					◎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 사용료(촬영등) 4,565,910원X12월 = 54,790 ◎문예전시관 사용료 30,000원X100일 = 3,000 ◎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사용료 3,717,249 ●종합운동장 ,공도장,시민운동장 116,325,000원X12월 = 1,395,900 ●부천체육관 61,742,500원X12월 = 740,910 ●소사국민체육센터 131,703,330원X12월 = 1,580,439 ◎송내사회체육관 14,546,920원X12월 = 174,563 ◎폐기물종합처리장내 부지사용료 = 34,051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2) 사용료수입

목: (212-08) 기타사용료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지리정보복제 사용료 = 5,000 ◎도시공원 점용료 = 2,000 ◎중계기 장소제공(소사구) = 700
	213 수수료수입	14,351,328	13,989,842	361,486	
	213-01 증지수입	4,474,788	4,292,004	182,784	
					◎주민등록 등·초본 861,878 ●본 청 350원X91,200건 = 31,920 ●원미구 350원X1,359,285건 = 475,749 ●소사구 350원X548,826건 = 192,089 ●오정구 350원X463,200건 = 162,120 ◎주민등록 등·초본 열람 15,393 ●원미구 250원X23,060건 = 5,765 ●소사구 250원X19,456건 = 4,864 ●오정구 250원X19,056건 = 4,764 ◎인감증명 및 개인신고 517,554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3) 수수료수입

목: (213-01) 증지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본 청 600원X920건X12월 = 6,624
					●원미구 600원X452,626건 = 271,575
					●소사구 600원X222,431건 = 133,458
					●오정구 600원X176,496건 = 105,897
					◎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237,900
					●원미구 5,000원X24,215건 = 121,075
					●소사구 5,000원X12,025건 = 60,125
					●오정구 5,000원X11,340건 = 56,700
					◎어디서나 민원발급 수수료 = 55,929
					◎건축물관리대장 500원X196,799건 = 98,399
					◎토지대장 500원X126,169건 = 63,084
					◎지적도 22,011
					●지적도(임야도) 700원X28,895건 = 20,226
					●경계점좌표 등록부 500원X2,412건 = 1,206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3) 수수료수입

목: (213-01) 증지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등록증명서 1,000원X511건 = 511
					●지적측량기준점 400원X170건 = 68
					◎토지이용계획확인원 1,000원X64,335건 = 64,335
					◎토지가격확인원 600원X57,449건 = 34,469
					◎세무제증명 1,200원X117,912건 = 141,494
					◎호적등본 600원X225,060건 = 135,036
					◎호적초본 500원X26,439건 = 13,219
					◎전세권 확정일자 600원X28,449건 = 17,069
					◎대형폐기물 수수료 = 1,136,649
					◎인허가 민원접수 수수료 355,144
					●본 청 13,300,000원X12월 = 159,600
					●원미구 9,721,080원X12월 = 116,652
					●소사구 3,574,410원X12월 = 42,892
					●오정구 3,000,000원X12월 = 36,00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3) 수수료수입

목: (213-01) 증지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무인민원발급재증명 수수료 3,700,000원X12월 = 44,400
					◎인터넷민원 수수료 2,565,000원X12월 = 30,780
					◎옥외광고물 수수료 = 111,078
					◎자동차 증지수입 419,719
					●자동차 신규등록 2,000원X2,700건X12월 = 64,800
					●자동차 이전등록 1,000원X3,400건X12월 = 40,800
					●자동차 시·도 변경 1,300원X1,100건X12월 = 17,160
					●자동차 말소등록 1,000원X1,750건X12월 = 21,000
					●자동차 저당설정 10,000원X2,100건X12월 = 252,000
					●자동차 저당말소 1,000원X710건X12월 = 8,520
					●자동차등록증 재교부 700원X1,200건X12월 = 10,080
					●자동차등록원부 3,919
					- 도내 300원X7,932건 = 2,379
					- 타시도 1,300원X1,185건 = 1,54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3) 수수료수입

목: (213-01) 증지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고 12,000원X10건X12월 = 1,440 ◎개별주택 확인원 1,000원X720건 = 720 ◎건강진단서발급 수수료 2,000원X7,500건 = 15,000 ◎보건증 발급 수수료 1,500원X32,000건 = 48,000 ◎병의원·약국개설 수수료 25,000원X1,200건 = 30,000 ◎일반진단서발급 수수료 500원X500건 = 250 ◎기타 인허가 수수료(보건소) = 4,200 ◎기타 민원발급 수수료 = 1,078
	213-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입	7,500,000	7,500,000	0	◎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625,000,000원X12월 = 7,500,000
	213-03 재활용품수거판매수	1,672,800	1,512,776	160,024	◎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89,000원X8,800톤 = 1,663,200 ◎소각잔재물(고철) 판매수입 60,000원X160톤 = 9,60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3) 수수료수입

목: (213-04) 기타수수료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213-04 기타수수료	703,740	685,062	18,678	
					◎중소형음식점 음식물처리비(대장동) 9,200,000원X12월 = 110,400 ◎건강진단감사비 11,660원X8,000건 = 93,280 ◎운동측정실 수수료 5,500원X3,000건 = 16,500 ◎재활운동지도 수수료 20,000원X300건 = 6,000 ◎건강보험 진료비 3,850원X63,500건 = 244,475 ◎의료보호 진료비 3,850원X3,500건 = 13,475 ◎일반환자 진료비 3,850원X200건 = 770 ◎치아홈메우기 5,000원X4,800건 = 24,000 ◎불소겔도포 진료비 5,000원X2,500건 = 12,500 ◎혈액형검사(간염검사등 22종) 6,000원X12,000건 = 72,000 ◎소변검사 700원X1,500건 = 1,050 ◎B형간염 접종비 3,500원X10,100건 = 35,35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3) 수수료수입

목: (213-04) 기타수수료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임산부, 영유아 건강검진비 5,000원X6,100명 = 30,500 ◎선천성대사이상 검사채혈비 2,500원X60명 = 150 ◎건강증진센터(소사보건소) 종합정밀건강진단 152,410원X100명 = 15,241 ◎보육시설 아동검진비 1,730원X1,500건 = 2,595 ◎성인병검진비 22,330원X800건 = 17,864 ◎방사선촬영비 4,260원X1,500건 = 6,390 ◎무인복사기 수수료 100,000원X12월 = 1,200
	214 사업수입	2,664,448	2,275,200	389,248	
	214-01 사업장생산수입	2,664,448	2,275,200	389,248	
					◎쓰레기소각장 폐열매각(삼정동) 14,053원X5,300GcalX12월 = 893,770 ◎쓰레기소각장 폐열매각(대장동) 14,053원X10,500GcalX12월 = 1,770,678
	215 징수교부금수입	5,911,186	7,141,587	△1,230,401	
	215-01 징수교부금수입	5,911,186	7,141,587	△1,230,401	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10) 경상적세외수입

항: (215) 징수교부금수입

목: (215-01) 징수교부금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도세징수교부금 177,108,000,000원X3/100 = 5,313,240 ◎환경개선부담금 6,614,000,000원X9/100 = 595,260 ◎배출부담금(대기,수질,기본) 20,000,000원X0.1 = 2,000 ◎항결행보급 수수료 2,288,000원X30/100 = 686
	216 이자수입	4,961,769	6,784,600	△1,822,831	
	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4,911,243	6,656,800	△1,745,557	◎공공예금이자 = 4,911,243
	216-02 민간용자금회수이자 입	3,000	0	3,000	◎민간용자금 체납액 회수 이자 = 3,000
	216-03 기타이자수입	47,526	127,800	△80,274	◎세입세출외현금 이자 = 47,526
	220 임시적세외수입	50,072,498	56,733,314	△6,660,816	
	221 재산매각수입	30,000,000	0	30,000,000	
	221-02 공유재산매각수입	30,000,000	0	30,000,000	
					◎상업용지 매각 30,000,000 ●중동1124-8번지외 12필지 = 30,000,000
	222 순세계잉여금	2,000,000	26,000,000	△24,000,000	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2) 순세계잉여금

목: (222-01) 순세계잉여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222-01 순세계잉여금	2,000,000	26,000,000	△24,000,000	◎순세계잉여금 = 2,000,000
	224 전입금	8,509,000	224,000	8,285,000	
	224-04 기금전입금	8,509,000	0	8,509,000	
					◎통합관리 기금 8,509,000 ●부천테크노파크 3차사업관련 동부간선수로 부지 매입비 조기상환 = 8,509,000
	226 융자금 원금수입	2,500	27,500	△25,000	
	226-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	2,500	27,500	△25,000	◎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= 2,500
	227 부담금	1,677,930	24,427,930	△22,750,000	
	227-02 일반부담금	1,677,930	24,427,930	△22,750,000	
					◎개발부담금 = 1,000,000 ◎공동구 시설물 관리운영 부담금 677,930 ●상수도 특별회계(31.59%) = 214,158 ●한국전력공사(46.53%) = 315,441 ●KT(구 한국통신) (21.88%) = 148,331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8) 잡수입

목: (228-01) 불용품매각대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228 잡수입	6,448,953	4,664,528	1,784,425	
	228-01 불용품매각대	58,600	27,632	30,968	
					◎차량번호판교체 매각대금 1,350원X400kgX10회 = 5,400 ◎도서,잡지,신문 매각대금 = 1,000 ◎폐카트리지 매각수입 1,500,000원X2회 = 3,000 ◎관용차량 매각수입 48,300 ●본 청 15,000,000원X2대 = 30,000 ●소사구 1,000,000원X5대 = 5,000 ●오정구 = 13,300 ◎기타 불용품 매각 = 900
	228-02 변상금	144,892	453,435	△308,543	
					◎국,공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= 9,000 ◎도시가스 정압기시설 변상금 = 5,307 ◎도로점용 변상금 77,585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8) 잡수입

목: (228-02) 변상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원미구 = 42,985 ●소사구 = 16,600 ●오정구 = 18,000 ◎가로수 변상금 53,000 ●원미구 = 30,000 ●소사구 = 8,000 ●오정구 = 15,000
	228-03 위약금	24,000	40,000	△16,000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약정위반위약금 수입 24,000 ●본 청 = 20,000 ●원미구 = 1,000 ●소사구 = 3,000
	228-04 과태료및범칙금수입	2,832,068	2,747,971	84,097	
					◎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= 20,00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8) 잡수입

목: (228-04) 과태료및법칙금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0,000원X50건 = 5,000
					◎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,000원X50건 = 25,000
					◎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200,000원X20건 = 4,000
					◎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60,000원X350건 = 21,000
					◎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= 2,000
					◎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= 10,000
					◎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= 96,000
					◎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58,000원X350건X12월 = 243,600
					◎자동차등록 과태료 123,000원X300건X12월 = 442,800
					◎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,000원X1,399건X12월 = 486,852
					◎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= 4,800
					◎수출이행위반 과태료 500,000원X10건X12월 = 60,00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8) 잡수입

목: (228-04) 과태료및범칙금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이륜차등록 과태료 60,000원X5건X12월 = 3,600
					◎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50,000원X20건X12월 = 12,000
					◎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400,000원X13건X12월 = 62,400
					◎방치차량 범칙금 106,000
					●무단방치차량 범칙금 200,000원X80건 = 16,000
					●무단방치차량 범칙금 1,000,000원X90건 = 90,000
					◎약사법위반 과징금 = 27,270
					◎의료법위반 과징금 = 5,500
					◎불법건축물위반 과태료 = 6,200
					◎식품위생관련법위반 과태료 = 17,500
					◎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 = 12,500
					◎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= 60,000
					◎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= 8,50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8) 잡수입

목: (228-04) 과태료및법칙금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소음진동규제법위반 과태료 = 3,500
					◎건축이행강제금 = 519,000
					◎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 = 34,500
					◎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 = 24,600
					◎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= 1,900
					◎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= 4,800
					◎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위반 과태료 = 13,000
					◎음반,비디오물에관한법 위반 과징금 = 75,500
					◎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= 14,000
					◎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위반 과태료 = 6,200
					◎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= 204,682
					◎호적법위반 과태료 = 30,363
					◎체육시설설치이용법 위반 과태료 = 3,000
					◎도로무단점용 과태료 = 19,501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8) 잡수입

목: (228-04) 과태료및범칙금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= 115,000
					◎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 = 20,000
	228-09 기타잡수입	3,389,393	1,395,490	1,993,903	
					◎폐기문서 매각대금 = 4,300
					◎주민등록전산자료 사용료 8,000,000원X2회 = 16,000
					◎청사진 사용료 = 6,000
					◎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 공공요금 = 42,272
					◎(재)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임차보증금 회수 = 2,200,000
					◎시립예술단 외부 협연료 10,000,000원X12회 = 120,000
					◎경륜·경정법에 의한 지방재정지원금 = 266,000
					◎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수수료 = 100,000
					◎농지조성에 따른 전용부담금 수수료 = 50,000
					◎시유지 역곡과수원 복숭아 판매대금 = 6,75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8) 잡수입

목: (228-09) 기타잡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부천지하상가 공공요금 = 300,961
					◎부천지하상가 관리비 = 155,851
					◎부천시 유료광고료 = 1,500
					◎무단방치차량 견인료 수입 27,000원X50대X12월 = 16,200
					◎무단방치차량 폐차 80,000원X600대 = 48,000
					◎도서관 식당 전기·상하수도 요금 7,560
					●중앙도서관 = 2,520
					●심곡도서관 = 1,320
					●북부도서관 = 1,200
					●꿈빛도서관 = 2,520
					◎도서관 매점 전기요금 1,200
					●중앙도서관 = 600
					●꿈빛도서관 = 600
					◎만화정보센터 전기요금 = 2,04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8) 잡수입

목: (228-09) 기타잡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자판기 전기요금 5,716 ●시립도서관 = 3,600 ●소사구청 = 1,200 ●오정구(동) = 916 ◎원미구시설사용 공공요금 = 2,600 ◎오정구청시설 공공요금 = 22,341 ◎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= 6,052 ◎기타잡수입 = 8,050
	229 지난년도수입	1,434,115	1,389,356	44,759	
	229-01 지난년도수입	1,434,115	1,389,356	44,759	
					◎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민간융자금 = 30,000 ◎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= 175,000 ◎환경관리법위반 과태료 = 1,800 ◎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60,000원X300건X12월 = 216,000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9) 지난년도수입

목: (229-01) 지난년도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자동차등록 과태료 20,000원X50건X12월 = 12,000
					◎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44,000원X600건X12월 = 316,800
					◎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50,000원X4건X12월 = 2,400
					◎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50,000원X15건X12월 = 9,000
					◎자동차관리법 과징금 300,000원X10건 = 3,000
					◎시공유지 대부료 = 8,765
					◎도로사용료 = 161,832
					◎변상금 = 31,102
					◎불법건축물위반 과태료 = 1,100
					◎대기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= 1,000
					◎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 = 1,500
					◎부동산 실 권리자 과징금 = 30,000
					◎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= 15,495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9) 지난년도수입

목: (229-01) 지난년도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	
						◎음반,비디오물에관한법 위반 과징금 = 4,000
						◎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위반 과태료 = 1,100
						◎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= 3,000
						◎건축이행강제금 = 233,483
						◎도로무단점용 과태료 = 8,683
						◎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= 95,000
						◎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 = 5,000
						◎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= 600
						◎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위반 과태료 = 1,000
						◎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= 400
						◎가로판매점 = 66
						◎매설 점용료 = 524
						◎도로점용료 = 50,010
						◎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= 4,355

장: (200) 세외수입

관: (220) 임시적세외수입

항: (229) 지난년도수입

목: (229-01) 지난년도수입

[단위:천원]

과 목	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	
						◎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 = 10,000
						◎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= 100

장: (300) 지방교부세

관: (310) 지방교부세

항: (311) 지방교부세

목: (311-01) 지방교부세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300 지방교부세		3,000,000	4,734,871	△1,734,871	
310 지방교부세		3,000,000	4,734,871	△1,734,871	
311 지방교부세		3,000,000	4,734,871	△1,734,871	
311-01 지방교부세		3,000,000	4,734,871	△1,734,871	
					◎분권교부세 3,000,000
					●가정위탁 양육지원 = 149,411
					●결식아동급식 = 133,740
					●경로당운영난방비 = 128,639
					●경로식당 무료급식 = 84,754
					●노숙인보호 및 지원 = 1,800
					●노숙인보호 쉼터운영비 = 2,860
					●노인복지회관 운영비 = 37,890
					●노인시설운영 = 249,386
					●노인일거리마련사업 = 8,175
					●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= 75,573

장: (300) 지방교부세

관: (310) 지방교부세

항: (311) 지방교부세

목: (311-01) 지방교부세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 = 14,646
					●농업인자녀학자금 = 282
					●모자복지시설운영 = 64,739
					●모자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= 3,106
					●문화학교운영 = 6,000
					●사회복지관 기능보강 = 232,454
					●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= 44,880
					●사회복지관운영지원 = 132,184
					●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= 7,953
					●소년소녀가정지원 = 12,595
					●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= 29,618
					●시니어클럽운영 = 19,486
					●아동시설운영 = 252,866
					●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= 109,319

장: (300) 지방교부세

관: (310) 지방교부세

항: (311) 지방교부세

목: (311-01) 지방교부세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= 45,916
					●장애인복지관 운영 = 175,659
					●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= 44,900
					●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= 16,768
					●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= 87,302
					●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= 40,388
					●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= 117,957
					●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= 30,000
					●지역봉사사업 = 2,230
					●지자체 공공근로사업 = 629,024
					●퇴소아동자립정착금 = 7,500

장: (400)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관: (420) 재정보전금

항: (421) 재정보전금

목: (421-01) 재정보전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4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 금		86,369,541	88,209,393	△1,839,852	
420 재정보전금		86,369,541	88,209,393	△1,839,852	
421 재정보전금		86,369,541	88,209,393	△1,839,852	
421-01 재정보전금		86,369,541	88,209,393	△1,839,852	
					◎재정보전금 86,369,541
					●일반 재정보전금 = 71,823,316
					●특별 재정보전금 = 14,546,225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10) 국고보조금등

항: (511) 국고보조금등

목: (511-01) 국고보조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500 보조금		133,171,542	94,035,986	39,135,556	
	510 국고보조금등	88,076,845	61,809,136	26,267,709	
	511 국고보조금등	88,076,845	61,809,136	26,267,709	
	511-01 국고보조금	76,560,997	61,748,696	14,812,301	
					◎가정.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= 2,500 ◎가정.성폭력피해자 치료.회복 프로그램 운영 = 20,000 ◎가정.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= 30,000 ◎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= 134 ◎농업인 전문교육 = 750 ◎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= 28,583 ◎산모,신생아 도우미 지원 = 304,000 ◎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= 115,660 ◎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= 840,000 ◎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= 376,568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10) 국고보조금등

항: (511) 국고보조금등

목: (511-01) 국고보조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양곡관리경상비 보조 = 2,200
					◎장애인 의료비 = 103,670
					◎장애인자녀 교육비 = 6,693
					◎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= 10,708
					◎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= 1,500
					◎지적불부합지 정리작업 = 766
					◎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= 2,712
					◎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= 1,000
					◎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= 3,000
					◎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= 29,750
					◎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 = 54,294
					◎경로연금 = 1,733,753
					◎광역도로건설사업 = 3,075,000
					◎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= 6,168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10) 국고보조금등

항: (511) 국고보조금등

목: (511-01) 국고보조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(장애인생활시설) = 109,222
					◎그룹홈지원 = 29,624
					◎근로소득공제(자활장려금)지원 = 288,000
					◎기초생활보장 급여(생계, 주거, 교육, 해산, 장제) = 30,886,000
					◎기초생활보장급여(노인시설) = 176,370
					◎긴급복지지원사업 = 364,000
					◎노인돌보미 지원 = 515,900
					◎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= 42,000
					◎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= 25,000
					◎노인일자리 지원 = 562,000
					◎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= 378,544
					◎등산로 정비 = 9,168
					◎모부자복지시설 급여 = 58,000
					◎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= 776,193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10) 국고보조금등

항: (511) 국고보조금등

목: (511-01) 국고보조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= 3,132
					◎민방위날 훈련경비 = 400
					◎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= 2,212
					◎보육료 지원 = 8,966,308
					◎보육시설 운영지원 = 6,242,364
					◎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= 71,750
					◎보육시설 기능보강 = 336,500
					◎불임부부 지원 = 277,000
					◎산림병해충 방제 = 21,140
					◎산림보호강화사업 = 71,836
					◎산불방지대책 = 40,326
					◎숲가꾸기 = 328,547
					◎숲길조사원 = 10,272
					◎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= 15,0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10) 국고보조금등

항: (511) 국고보조금등

목: (511-01) 국고보조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아동복지교사(사회적일자리) 지원 = 365,400
					◎아동복지시설 급여비 = 161,459
					◎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사업지원 = 71,666
					◎여성복지시설 급여 = 13,000
					◎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= 500
					◎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= 5,000
					◎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= 8,182,070
					◎입양아동 양육보조금 = 12,785
					◎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= 12,600
					◎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= 22,900
					◎자활근로사업 = 3,479,360
					◎자활후견기관 운영 = 349,300
					◎장애수당 = 3,318,396
					◎장애아동 부양수당 = 578,646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10) 국고보조금등

항: (511) 국고보조금등

목: (511-01) 국고보조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장애인등록 진단비 = 672 ◎재가노인지원센터 확충 = 532,500 ◎저소득 한부모가정(싱글맘,싱글팍)지원 = 610,711 ◎전염병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 = 400 ◎전처리시설 설치 = 351,000 ◎지역실업자 직업훈련 = 56,376 ◎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= 444,000 ◎천연가스버스 보급 = 562,500 ◎토양개량제 공급 = 8,576 ◎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= 60,000 ◎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(16세~40세) = 4,333 ◎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 홍보비 = 630
	511-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 금	6,515,800	0	6,515,800	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10) 국고보조금등

항: (511) 국고보조금등

목: (511-02)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

[단위:천원]

과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┌				◎공공도서관 건립지원 = 617,000
	┌				◎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= 10,000
	┌				◎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(청라화곡축) = 844,800
	┌				◎국제전시회 참가지원 = 2,000
	┌				◎수목원 조성 = 108,000
	┌				◎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= 4,100,000
	┌				◎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= 834,000
	511-03 기금	5,000,048	60,440	4,939,608	
					◎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= 779,025
					◎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= 7,800
					◎국가만성병(응급실손상등) 감시 = 3,700
					◎금연클리닉 운영 = 245,100
					◎노인의치 보철사업 = 57,850
					◎농지관리위원회 운영 = 3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10) 국고보조금등

항: (511) 국고보조금등

목: (511-03) 기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= 3,774
					◎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= 129,420
					◎보건소,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관리사업 = 8,310
					◎성병검진 및 치료비 = 1,014
					◎성병진단시약 구입 = 1,184
					◎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= 700
					◎에이즈진단시약 구매 = 3,206
					◎에이즈환자 등록관리비 = 706
					◎에이즈환자 진료비 = 30,000
					◎우수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= 4,080
					◎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= 389,225
					◎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 = 14,247
					◎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= 27,000
					◎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= 4,0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10) 국고보조금등

항: (511) 국고보조금등

목: (511-03) 기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치아흠메우기 사업 = 5,700
					◎학교정신건강 증진사업 = 15,000
					◎한방건강증진 = 7,080
					◎공동방재단 운영 = 972
					◎관광안내표지판 설치 = 10,000
					◎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= 953,692
					◎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= 15,000
					◎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= 121,000
					◎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 = 145,800
					◎방문보건인력교육훈련비 (5개사업) = 5,819
					◎보건소암예방 관리사업 = 12,300
					◎보건소예방접종 약품비등 = 193,997
					◎생물테러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= 1,320
					◎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= 17,49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10) 국고보조금등

항: (511) 국고보조금등

목: (511-03) 기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= 14,278
					◎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= 74,820
					◎암 조기검진 사업 = 241,900
					◎암환자 의료비 지원 = 271,000
					◎어르신 전담지도자배치(인건비) = 17,496
					◎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= 20,000
					◎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(인건비) = 29,250
					◎임산부, 영유아 검진사업 = 5,350
					◎임산부 산전관리비 = 34,300
					◎정신보건센터 운영 = 75,000
					◎조림사업 = 9,305
					◎주요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= 1,840
					◎중앙교육입교자 여비 = 648
					◎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(인건비) = 43,74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10) 국고보조금등

항: (511) 국고보조금등

목: (511-03) 기금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◎학교우유급식 지원 = 190,750
					◎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= 754,560
	520 시·도비보조금등	45,094,697	32,226,850	12,867,847	
	521 시·도비보조금등	45,094,697	32,226,850	12,867,847	
	521-01 시·도비보조금등	45,094,697	32,226,850	12,867,847	
					◎국비에 따른 도비 24,845,631
					●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= 1,500
					●가정·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= 6,375
					●가정·성폭력상담소 운영 = 27,147
					●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(청라화곡축) = 633,600
					●경로연금 = 371,519
					●공동방재단 운영 = 486
					●관광안내표지판 설치 = 5,000
					●광역도로건설사업 = 150,000
					●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= 476,846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= 7,500
					●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= 3,079
					●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(장애인생활시설) = 13,653
					●국제전시회 참가지원 = 6,000
					●그룹홈지원 = 22,218
					●근로소득공제(자활장려금)사업 = 36,000
					●기초생활보장급여(생계, 주거, 교육, 해산, 장제) = 3,860,750
					●기초생활보장급여(노인시설) = 22,046
					●긴급복지지원사업 = 45,500
					●노인돌보미 지원 = 110,550
					●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= 9,000
					●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= 12,500
					●노인일자리 지원 = 281,0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= 81,117
					●등산로 정비 = 6,418
					●모부자복지시설 급여 = 7,250
					●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= 776,193
					●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= 90,750
					●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= 6,020
					●민방위날 훈련경비 = 287
					●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= 1,706
					●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 = 72,900
					●방문보건 인력교육훈련비 (5개사업) = 2,911
					●보건소암예방 관리사업 = 6,150
					●보건소예방접종 약품비등 = 96,997
					●보육료 지원 = 4,483,154
					●보육시설 운영지원 = 3,121,182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= 35,875
					●보육시설 기능보강 = 168,250
					●불임부부 지원 = 138,500
					●산림병해충방제 = 7,540
					●산림보호강화사업 = 15,395
					●산불방지대책 = 28,227
					●생물테러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= 1,320
					●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= 20,405
					●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= 7,139
					●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= 56,115
					●수목원 조성 = 54,000
					●숲가꾸기 = 46,550
					●숲길조사원 = 2,159
					●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= 7,5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아동복지교사(사회적일자리) 지원 = 78,300
					●아동복지시설 급여비 = 20,182
					●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사업지원 = 15,357
					●암 조기검진사업 = 120,950
					●암환자 의료비 지원 = 135,500
					●어르신 전담지도자배치(인건비) = 8,748
					●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= 10,000
					●여성복지시설 급여 = 1,625
					●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 = 250
					●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= 2,500
					●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(인건비) = 14,625
					●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= 4,091,035
					●임산부,영유아 검진사업 = 4,013
					●임산부 산전관리비 = 25,725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입양아동 양육보조금 = 2,740
					●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= 2,700
					●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= 11,450
					●자활근로사업 = 434,920
					●자활후견기관 운영 = 74,850
					●장애수당 = 730,650
					●장애아동부양수당 = 125,860
					●장애인등록 진단비 = 336
					●재가노인지원센터 확충 = 266,250
					●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= 209,000
					●저소득 한부모가정(싱글맘,싱글팍) 지원 = 76,338
					●전염병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 = 400
					●전처리시설 설치 = 245,700
					●정신보건센터 운영 = 65,0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조림사업 = 2,588
					●주요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= 1,840
					●중앙교육입교자 여비 = 526
					●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= 1,640,000
					●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(인건비) = 21,870
					●지역실업자 직업훈련 = 7,047
					●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= 222,000
					●천연가스버스 보급 = 281,250
					●토양개량제 공급 = 1,072
					●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= 30,000
					●학교우유급식 지원 = 40,875
					●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= 377,280
					◎순수도비 16,000,431
					●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= 15,546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= 11,778
					●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= 25,200
					●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= 18,900
					●개인운영신고시설(아동) 지원 = 10,800
					●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 = 285,000
					●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= 64,420
					●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= 3,840
					●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= 161,000
					●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= 8,916
					●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비용 지원 = 10,750
					●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= 309,167
					●꿈나무아동복지관 운영비 지원 = 81,777
					●노숙인쉼터 종사자 복지수당 = 2,13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 = 5,000
					●노인교통비 = 1,067,174
					●노인일자리(교육형) 추가 = 35,750
					●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(이양사무) = 723,215
					●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= 304
					●농촌여성 정보지 제공 = 170
					●단기 청소년쉼터 운영(도 기금) = 64,000
					●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= 9,600
					●도로표지판 정비 = 300,000
					●도비장애수당 = 433,796
					●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= 6,240
					●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= 20,000
					●둘째아(0~1세) 이상 보육료 지원 = 1,220,472
					●로봇부품생산기술 기반구축 = 500,0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로봇부품생산기술 연구개발지원 = 500,000
					●모범화장실 지정운영 = 7,500
					●모자복지시설 운영 = 18,065
					●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= 1,287,000
					●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= 16,500
					●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 = 42,000
					●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= 3,000
					●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 = 6,000
					●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지원 = 2,000
					●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= 6,500
					●벼 건조 및 저장 관리기술 지원 = 2,700
					●벼 병충해 방제 = 1,050
					●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= 2,416
					●벼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= 1,92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보육기자재 현대화 = 46,000
					●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= 42,965
					●보행관리기 및 예초기안전판 지원 = 2,500
					●비수급빈곤층 생계구호 = 321,000
					●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관리금 보조 = 536,500
					●산불방지대책 = 4,905
					●성매매 및 가정폭력.성폭력 예방교육 = 10,000
					●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 = 1,378
					●수리시설 정비사업 = 173,000
					●시,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= 50,000
					●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= 39,600
					●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= 25,000
					●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= 81,250
					●시군 공무원성인지력 향상 교육 = 3,0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시군 실버인력뱅크 = 30,000
					●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 = 27,000
					● 시내버스 재정지원(이양사무) = 3,448,024
					●신세대농업인양성을 위한 과제활동지원 = 1,000
					●야생동물보호 사업 = 1,000
					●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= 30,000
					●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(이양사무) = 131,335
					●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료 지원 = 32,400
					●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 = 3,000
					●유급봉사원 확대운영 = 144,000
					●유기물동물 처리 = 72,000
					●은빛사랑채 설치 = 120,000
					●은빛사랑채 운영 = 26,700
					●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= 155,243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= 4,800 ●자원봉사자 활용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= 16,500 ●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 = 10,000 ●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= 10,800 ●자활근로사업 (자체사업) = 106,000 ●장애아·영아반교수 특수근무수당 = 35,400 ●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= 161,000 ●장애인복지택시 운영지원 = 57,600 ●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= 57,900 ●장애인생활시설 운영(이양사무) = 1,225,664 ●장애인자립 자립장 운영 = 12,000 ●장애인정보화 교육지원 = 6,300 ●장애인정보화 보조기기 보급 = 5,170 ●장애인편의시설 설치 = 50,0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 = 9,600
					●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= 4,000
					●저소득 한부모가정(싱글맘,싱글팜) 지원 = 261,280
					●저소득아동 특기교육(영어) = 48,000
					●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 = 25,200
					●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= 58,750
					●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= 16,000
					●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= 93,600
					●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지원 = 4,000
					●저소득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 = 4,200
					●전문기술,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육성 = 2,551
					●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지원 = 24,000
					●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= 228,6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= 27,600 ●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= 5,000 ●제17회 아마추어연극제 개최 = 3,000 ●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운영 = 30,000 ●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= 103,000 ●직업상담사 파견 = 18,000 ●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지원 = 7,500 ●청소년공부방 운영 = 65,160 ●청소년종합예술제 (예산) = 7,000 ●청소년할인 손실보전금 지원 = 125,400 ●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 = 300 ●평가인증보육시설 수수료 지원 = 10,625 ●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= 15,000 ●학교숲 조성 = 186,0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한센피부병 검진사업 = 3,575
					●보육시설장 전문교육 = 3,960
					◎분권교부세 4,248,635
					●가정위탁 양육사업 (이양사무) = 26,124
					●결식아동급식 (이양사무) = 759,235
					●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(이양사무) = 89,100
					●경로당 운영난방비 (이양사무) = 94,860
					●경로당 활성화사업 (이양사무) = 3,000
					●경로식당 무료급식 (이양사무) = 140,676
					●경로식당 취사원인건비 (이양사무) = 58,800
					●노숙인 보호 및 지원 (이양사무) = 2,438
					●노숙인 보호 (이양사무) = 24,285
					●노인건강진단 (이양사무) = 338
					●노인복지회관 운영비 (이양사무) = 270,0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노인시설운영(이양사무) = 549,513
					●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(이양사무) = 65,400
					●노인일거리마련사업 (이양사무) = 4,800
					●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(이양사무) = 95,177
					●농업인자녀 학자금 (이양사무) = 764
					●모자복지시설 운영 (이양사무) = 30,000
					●모자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(이양사무) = 4,500
					●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(이양사무) = 20,000
					●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(이양사무) = 40,092
					●소년소녀가정 지원 (이양사무) = 3,024
					●수화통역센터 운영 (이양사무) = 30,492
					●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(이양사무) = 49,025
					●시니어클럽 운영 (이양사무) = 15,000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(이양사무) = 46,026
					●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(이양사무) = 24,900
					●아동시설 운영 (이양사무) = 124,771
					●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(이양사무) = 58,849
					●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 (이양사무) = 34,988
					●장애인복지관 운영 (이양사무) = 229,078
					●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(7종) (이양사무) = 175,825
					●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(4종) (이양사무) = 29,966
					●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(이양사무) = 7,000
					●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(이양사무) = 13,195
					●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(이양사무) = 17,247
					●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(이양사무) = 37,259

장: (500) 보조금

관: (520) 시·도비보조금등

항: (521) 시·도비보조금등

목: (521-01) 시·도비보조금등

[단위:천원]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					●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(이양사무) = 283,647
					●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(이양사무) = 43,672
					●정신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지원 (이양사무) = 2,000
					●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(이양사무) = 4,700
					●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(이양사무) = 50,553
					●지역봉사사업 (이양사무) = 612
					●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(이양사무) = 49,800
					●지자체공공근로사업 (이양사무) = 629,904
					●퇴소아동 자립정착금 (이양사무) = 8,000

과 목		예 산 액	전 년 도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장.관.항	목				
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		21,000,000	0	21,000,000	
610 국내차입금		21,000,000	0	21,000,000	
613 지역개발기금		21,000,000	0	21,000,000	
613-02 지역개발기금시·군 구용자금수입		21,000,000	0	21,000,000	◎부천남부역광장 조성사업 차환 지방채 발행 = 21,000,000
세 입 합 계		560,141,038	492,448,219	67,692,819	
일 반 회 계 세입총계		560,141,038	492,448,219	67,692,819	